



“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수신자 받는 곳 참조 【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

(경 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담당

제 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 참여 신청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1월 21일 12개 해당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소각업계 추진방향, 환경부 간담회 개최, 탄원서 제출 등 향후계획 설명 및 법무법인 광장과 행정소송 추진에 대한 「소각업계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당일 논의된 사안 중 우선과제인 행정소송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귀 사의 참여 여부를 불임 양식에 따라 '15.2.2(월) 까지 FAX(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소송 추진

- 1) 소 송 명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 2) 대 리 인 : 법무법인 광장
- 3) 착 수 금 : 3천만원(부가세별도)
- 4) 성 공 보 수 : 1억원(할당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부가세별도)
- 5) 담당변호사 : 송평근, 이인형, 고원석, 설동근 변호사

※ 불임 자료에 첨부된 약력 참조

- 6) 소장제출일 : 2015년 3월 2일 한

7) 비용부담 : 참여업체별 배출권 할당비율 분담(참고)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분담비용
1	대일개발(주)	1,002,068
2	비노텍(주)	1,627,223
3	성림유화(주)	3,899,344
4	KG ETS(주)	6,637,147
5	(주)뉴그린	2,869,827
6	대길그린(주)	1,413,609
7	(주)에너지네트웍	2,896,045
8	(주)코엔텍	4,682,483
9	KC한미산업(주)	1,077,242
10	동양에코(주)	4,587,830
11	(주)명성환경	1,012,464
12	KC환경서비스(주)	1,294,718
합계(부가세 포함)		33,000,000

\* 단, 1.28(수) 개최된 호남권 대표자 협의회에서 향후 전조합원사가 배출권 거래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바, 금번 소송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전조합원사 공동 부담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소송 착수금은 조합에서 선 지급 후 2.27(금) 이사회 및 총회에서 심의되는 바에 따라 12개사 또는 전조합원사 분담中 결정 고지 계획임

나. 향후계획

- 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2.15 한)
  -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폐자원업계 탄원서 제출(2.2)
  - 3) 환경부-조합 간담회 개최(환경부와 협의 中)
  -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참석(환경부와 협의 中)

붙임 : 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송 청구서 1부.

2 범모법인 광장 검토의견서 1부. 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

받는 곳 : 대일개발(주), 비노텍(주), 성립유화(주), KG ETS(주), 주뉴그린, 대길그린(주), 주에너지네트웍,  
주코엔텍, KC한미산업(주), 동양에코(주), 주명성환경, KC환경서비스(주) 이상 12개사 대표이사

담당 오은석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신총식 이사장 김영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5 - 57호 (2015. 1. 29) 접수  
우 157-754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 www.kiwrma.or.kr  
전화 02-718-7900 전속 02-718-7171 / kiwrma@kiwrma.co.kr / 비공개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참여 신청서

### ■ 행정소송 참여

업 체 명	대 표 자	참여 여부		비 고
		참 여	불 참	

※ 상기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업 체 명 :

담당자 :

대표이사 : (인)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귀중

붙임 2

Lee  
&KO 법무법인 광장

[www.leeko.com](http://www.leeko.com)

Tel 02 772 4000 Fax 02 772 4001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2015년 1월 28일

수 신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참 조 : 회원사

제 목 : 배출권 할당에 대한 행정소송 실익에 대한 검토 제안서 송부(표지 포함 : 10면)

귀 조합의 회원사들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배출권할당 행정소송 실익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별첨과 같은 법률검토 의견 및 수임제안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검토 의견 및 제안서

법무법인 광장 (Lee & Ko)

대표변호사 김재훈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이지은

## 의견 및 제안서

### I. 사안의 경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의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귀 조합의 회원사들인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이하 ‘소각업체’)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약 565만톤 신청하였으나 2014. 12. 2. 환경부로부터 483만톤(85.4%)만을 할당받아 약 82만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각업체는 폐기물소각량을 줄이거나 톤당 약 1만원 상당의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으면 향후 톤당 약 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조합은 회원사들이 신청한 양보다 적게 할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방안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II. 배출권 할당에 대한 법적 쟁송 가능성 검토

#### 1.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규의 체계

배출권거래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text{CO}_2\text{-eq}$ )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text{CO}_2\text{-eq}$ )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부는 계획기간(3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제12조).

배출권 할당은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제출 실적,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량의 형평성, 온실가스 감출기술수준 및 국제경쟁력,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정도,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할당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환경부는 1.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3.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제13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5.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6.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7.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 8.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同種)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이하 “벤치마크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 제12조).

그리고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는바, 2014. 9. 12.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59호, 이하 ‘할당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 2. 할당지침의 법적 성격

할당지침은 고시인데, 고시란 행정기관인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고, 이는 규정 형식상 행정규칙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침은 상위법령인 배출권거래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원칙적으로 규범력(외부법으로서의 효력, 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당해 행정기관이 그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그 행정규칙의 규범력 여부가 문제됩니다.

학설은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이 있으나,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여 법규명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누 484 판결; 同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동 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등).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나아가 법령이 행정규칙에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이 사건 할당지침은 환경부 고시로서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할당기준을 정하여 사업자들의 권리인 화석연료사용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3. 위임한계를 벗어난 지침의 효력

법원은 모법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위법령은 무효라고 하며(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구12086 판결),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고,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또한 법원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품목허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상 특별한 근거 없이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를 천연물신약에서 제외하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한 사안에서,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면허 범위를 구분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고시의 위임 근거에 해당하는 약사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을 수도 없음에도 행정주체인 피고로서는 이와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준수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 고시를 마련했어야 옳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고시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2구합42199 판결).

위 서울행정법원의 의약품 관련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고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판결은 이 사건 배출권 할당 지침에서 상위법령의 위임내용과 다르게 소각업체의 화석연료 대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시멘트, 제지 등의 경우에만 화석연료대체효과를 인정한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 4. 이 사건 할당지침의 효력

먼저 환경부 할당지침의 상위법인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 제1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지침에는 소각업체들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함이 없다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할당대상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할당지침 제16조 제1항 6호에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추가할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 규정은 소각업체에는 적용이 없고 제조업체에서 화석연료 대신에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귀사와 같은 소각업체가 폐기물을 소각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 증기, 전기 등을 화석연료를 사용에 대체하면 그만큼 온실가스의 배출은 상쇄되어 실질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멘트, 제지 등 업체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공장을 더 많이 가동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갈음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더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만큼의 추가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폐기물<sup>1)</sup>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체에게 위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배출권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할당지침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환경부 할당지침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 시멘트 업체 등이 사용하는 가연성 폐기물 역시 대부분 석유화학제품이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할당지침 제16조 제1항 6호에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추가할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 규정을 소각업체에는 적용이 없고 제조업체에서 화석연료 대신에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소각업체들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때 환경부가 위 할당지침 제16조 제1항 제6호를 잘못 적용하여 소각업체만을 추가할당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5.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및 지원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제 관련 할당지침 등 하부규정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 비추어 폐기물 소각의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호주와 같이 폐기물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매립하여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규제할 뿐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소각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할당지침에서 소각업체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각업체를 할당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할당을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자문료를 받음이 없이 **입법개정자문**을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III. 소송 수행 변호사들의 구성

배출권 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있는 변호사가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배출권거래제 소송을 할 경우 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송평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행정법원 부장 판사출신인 이인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소송을 진행하고 부장판사출신으로 중앙행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등이 소송을 지원하며, 환경전문변호사로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소송, 실무에 다양한 경험을 한 설동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관련 자료 리서치, 법리연구 등을 담당할 것입니다(상세한 이력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http://www.leeko.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하시는 경우 회사 소개서 및 소송 담당 변호사의 상세이력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IV. 수임료의 제안

본건 소송은 실질적인 소송가액의 크기(약 82억원), 향후 추가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회원사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해외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임료를 제안드립니다.

- 착수금: 금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성공보수: 할당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금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의 내용을 귀사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송 평 근 (宋平根)

송평근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하기 전까지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여 온 송무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한 행정소송 전반,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형사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요처리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통신선 지중화 비용청구소송  
이동통신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료 청구 소송  
인터넷TV 사업자의 MSO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LPG 가격담합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SK C&C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약회사간 reverse payment 관련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 소송

한화 S&C 경영권 양도 관련 주주대표소송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대표이사의 위법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형사 소송

디도스 특검 관련 형사 소송

### 경력

법무법인 광장(Lee & Ko): 2010-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08-

수: 2012-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6-  
2008

### 자격/회원

한국변호사(대한변협, 서울변협)

### 언어

한국어 및 영어

### 저술/발표/강의

- 무효인 보증보합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 경합범으로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서울 종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100-770  
Direct) 02-772-5990  
Fax) 02-772-4001/2  
E-mail) [inh@leeko.com](mailto:inh@leeko.com)

#### 전문분야

행정(조세, 노동, 도시정비, 일반행정),  
형사, 기업일반, 건설, 공정거래,  
보험, 가사

#### 학력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1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88

#### 경력

법무법인 광장(Lee & Ko): 2014-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3-2014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0-2013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가사):  
2008-2010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장(민사, 형사,  
가사), 서산지원 부장판사 경임:  
2006-2008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비송):  
2004-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영장 전담):  
2001-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형사, 영장 전담):  
1998-20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96-1998

광주지방법원 판사: 1994-1996

## 이 인 형 (李仁亨)

### 변호사

이인형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조세, 노동 전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조세, 도시정비, 노동), 민사, 형사, 가사 등 사건을 전담하다가 2014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하여 송무 업무 전반에 걸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처리사례

-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대하여 그 노조 등에게 회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박카스, 소화제, 파스 등 일부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적법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 – 증여세부과 취소 판결 선고
- 국제조세소송에 있어서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관한 리딩 케이스 선고 (서울시티타워 주식회사 사건) – 수익적 소유자성 인정
- 풀무원홀딩스에 부과된 관세부과처분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
-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 판결 선고
- 학교용지법 상 학교용지부당금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 타임오프 고시 유효 판결 선고
- 군산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 선고

### 저술/발표/강의

- 서울행정법원 발간(2012) 조세소송실무
-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변호사 대상 행정소송 강의
- 법무연수원 주관 검사 대상 행정소송 강의



## 고 원 석 (高元錫)

### 변호사

고원석 변호사는 2005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후 기업관련 민·형사 송무 특히 M&A 및 금융 송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오며 법무법인 광장의 송무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100-770  
Direct) 02-2191-3047  
Fax) 02-772-4001/2  
E-mail) [wonseok.ko@leeko.com](mailto:wonseok.ko@leeko.com)

전문분야  
증권, 금융, 기업일반, 형사  
행정소송, 건설

### 학력

미국 Stanford Law School 장기연수: 1997-1998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84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 경력

법무법인 광장(Lee & Ko): 2005-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0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010, 2011, 2013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2-20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2001-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19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1997  
제주지방법원 판사: 1993-199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199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9-1991  
법무관: 1986-1989

### 자격/회원

한국변호사(대한변협, 서울변협)

###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서울 종로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100-770  
Direct) 02-772-4881  
Fax) 02-772-4001/2  
E-mail) [tongkeun.seol@leeko.com](mailto:tongkeun.seol@leeko.com)

**전문분야**  
환경, 인사 및 노무  
에너지자원, 기업인수합병, 행정소송

**학력**  
계명대학교 대학원 환경과학과 석사과정  
수료(기후온난화대비특성화대학원) : 2008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93

**경력**  
법무법인 광장(Lee & Ko): 2010-현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12-현재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2-현재

환경부 고문변호사(2012-현재)  
서울지방변호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간사 : 2009-현재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고문변호사  
서울시 녹색서울시민 위원: 2008-  
2010, 2010-2012

한국생산성본부 M&A강사, 매일경제 신  
재생에너지 CDM강사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간사: 2005-2006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

**자격**  
한국변호사: 2001

## 설동근 (薛東根)

###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이래 환경, 노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배출권거래, CDM등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분쟁 등 환경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M&A, 기업구조조정 등 노동법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요처리사례

- 서울시 암사정수장 태양광발전소
- 대구 방천리 매립장 CDM 사업 자문
- 인증온실가스배출량(CERs) 분쟁 상사중재 대리
- 대구시의 인증온실가스배출감축량(CERs) 매각 자문(프랑스 배출권 거래소 Bluenext)
- 부산 도시철도 CDM 프로젝트 법률자문
- 신·재생에너지 기업 T사 우회상장 및 해외전환사채 투자유치 자문
- LED 전문기업 E사 투자유치 자문
- SOC 전문재투자금융기관 K사의 수도권 매립지 발전소 에코에너지 인수 및 재매각 자문
- K은행 등의 워크아웃기업 H사 매각 자문
- 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상장 제과원료 판매업체 J사 인수 및 재매각 자문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A사의 적대적 M&A 자문
- 서울시 기후변화 조례 제정 자문
- 서울시 자동차 공해 손해배상소송 서울시 대리
-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 바이어메탄 차량연료화 시범사업 법률자문
- 구미시와 마산시 쓰레기매립지 LFG 발전소 CDM 사업 자문
- 무안환경처리센터 SOC 자문
- 대천하수처리장 SOC 자문
-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매제(RPS) 관련 자문
- M&A 및 주주간 분쟁 관련, 기업업무 관련 소송 및 자문
- 신·재생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자문
- 기업의 노사관리, 분쟁 자문

### 수상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모범변호사 표창 : 2007